

<별첨 1> 우리나라 「건축법」상 화재예방에 관한 주요 규정 요약

시설유형	조항	대상		비고
직통계단	법 49조 1항 영 34조 2항	모든 층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층의 해당용도 바닥면적 합계 200㎡(공연장·종교집회장은 300㎡) 이상인 것 공동주택, 오피스텔 중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인 것	2개소 이상 설치
		3층 이상	다중주택·다가구주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300㎡ 이상), 학원·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학원, 아동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유스호스텔 중 3층 이상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상인 것 그 외 용도 중 3층 이상 바닥면적 합계가 400㎡ 이상인 것	피난계단 또는 특별 피난계단 설치
		지하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상인 것	
피난계단	법 49조 1항 영 35조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		
		17층 이상(공동주택은 16층), 지하 3층 이상 (바닥면적 400㎡ 미만은 제외) 고층건축물(30층 또는 120m 이상)		
		5층 이상	수련시설 용도 층의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 바닥면적 합계 2,000㎡ 이내마다 1개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설치	
출입구	법 49조 2항 영 38조, 39조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체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 공연장·종교집회장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청사 장례식장 연면적 5,000㎡ 이상인 창고시설 학교 승강기 설치 건축물		건축물 바깥쪽에서의 출입구 설치
방화구획	법 49조 2항 영 46조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이며, 연면적 1,000㎡ 이상		내화구조의 바닥벽 및 갑종 방화문 등 구획 (방화구획)
계단·복도 및 출입구 설치	법 49조 2항 영 48조	연면적 200㎡ 초과		양옆에 거실 있는 복도 1.5m 이상(의료시설 1.8m 이상) 그 외 복도 1.2m 이상
내화구조	법 50조 1항 영 56조, 법 51조	공연장·종교집회장 바닥면적의 합계 300㎡ 이상 주점영업 및 장례식장 바닥면적 합계 200㎡ 이상(옥외는 1,000㎡ 이상) 공장 바닥면적 합계 2,000㎡ 다중주택·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의료시설, 다중생활시설, 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유스호스텔, 오피스텔, 숙박 시설, 바닥면적 합계 400㎡ 이상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지붕		주요구조부 내화구조

시설유형	조항	대상		비고
방화벽	법 50조 2항, 영 57조	연면적 1,000㎡ 이상		방화벽 구획 바닥면적의 합계는 1,000㎡ 미만
피난 안전구역	법 50조의 2	고층건축물(30층 또는 120m 이상)		
기준 강화	법 50조의 2	고층건축물(30층 또는 120m 이상)		48조~50조 제65조 기준 강화 적용
불연재료	법 5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의 공작물(높이 3미터 이상)의 주요부		
방화설비	법 51조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중 외벽 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 3m 이내, 2층 이상 5m 이내 거리에 있는 건축물		갑종방화문 드렌처 내화구조·불연재료의 방화설비 불연재료의 방화커버
내부마감재료	법 52조, 법 52조의 3 영 61조	모든 층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위락시설 바닥면적 합계 200㎡ 이상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건축물은 400㎡ 이상)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방송국, 촬영소, 발전시설 공장(1층 이하, 연면적 1,000㎡ 미만은 제외) 창고 바닥면적 3,000㎡(소화설비 설치 시 6,000㎡) 이상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 마감재료 중 복합자재 사용 건축물은복합품질관리서 제출, 난연성분 분석시험 실시
		3층 이상	다중주택·다가구주택, 공동주택, 학원, 독서실, 다중생활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학원,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유스호스텔, 오피스텔, 장례식장의 바닥면적 합계 200㎡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건축물은 400㎡ 이상)	
		5층 이상	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	
외부마감재료	법 52조, 52조의 3 영 61조	다중이용업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 공장용도 건축물로부터 6m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고층건축물(30층 또는 120m 이상)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 마감재료 중 복합자재 사용 건축물은 복합품질관리서 제출, 난연성분 분석시험 실시
실내건축 방화	법 52조의 2	다중이용 건축물 분양 부분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		벽, 천장, 바닥 및 반차들에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 사용 난간, 창호, 출입문은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 사용
마감재료 중 복합자재	법 52조의 3	마감재료 중 복합자재 사용 건축물		복합품질관리서 제출, 난연성분 분석시험 실시
온돌 및 난방설비	법 63조	온돌 및 난방설비 건축물		열관류저항 60% 이상, 최하층의 바닥은 70% 이상 온돌 및 난방설치확인서 제출

<별첨 2> 우리나라 주택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요약

○ 주택(단독주택, 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 소화설비

설비유형	설치 기준			
소화기구	연면적 33㎡ 이상(노유자 시설은 1/2 이상으로 설치) 지정문화재 및 가스시설 터널			
자동소화장치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아파트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모든 층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가스자동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옥내소화전설비	일반	연면적 3,000㎡ 이상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	바닥면적 600㎡ 이상	
	터널	길이 1,000m 이상		
	일반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및 복합건축물 ^{주1)}	연면적 1,500㎡ 이상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	바닥면적 300㎡ 이상	
	옥상의 차고 또는 추차장	해당용도 면적 200㎡ 이상		
공장, 창고시설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스프링클러설비	11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일반	수용인원 100명 이상	
		영화상영관 용도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	바닥면적 500㎡ 이상
			그 외 층	바닥면적 1,000㎡ 이상
		무대부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	바닥면적 300㎡ 이상
	그 외 층		바닥면적 500㎡ 이상	
	판매시설, 운수시설, 물류터미널	바닥면적 5,000㎡ 이상 수용인원 5000명 이상		
	정신의료기관, 요양병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바닥면적 합계 600㎡ 이상		
	창고시설	일반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	
		천장 또는 반자 높이 10m를 넘는 랙식창고(rack warehouse)	바닥면적의 합계 1,500㎡ 이상	
	수량 1,0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 저장·취급시설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중 소화수 수집·처리 설비시설			

설비유형	설치 기준			
	지붕·외벽이 불연재료나 내화구조가 아닌 것	물류터미널	바닥면적 합계 2,500㎡ 이상 수용인원 250명 이상	
		물류터미널 외	바닥면적 합계 2,500㎡ 이상	
		랙식창고	바닥면적 합계 750㎡ 이상	
		공장, 창고시설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의 바닥면적 500㎡ 이상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 저장·취급시설	
지하가(터널제외)	연면적 1,000㎡ 이상			
기숙사, 복합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			
교정 및 군사시설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관찰소, 갯생보호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거실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시설, 외국인 보호소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유치장			
위 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교육연구시설 내 합숙소		연면적 100㎡ 이상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요양병원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 600㎡ 미만 바닥면적 합계 300㎡ 미만, 창살 설치시설	
	노유자 시설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 600㎡ 미만 바닥면적 합계 300㎡ 미만, 창살 설치시설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시설(임차)			
	숙박시설 중 생활형 숙박시설		해당용도 바닥면적 합계 600㎡ 이상	
복합건축물		연면적 1,000㎡ 이상		
물분무등 소화설비	항공기격납고 연면적 800㎡ 이상의 주차용건축물 바닥면적 합계 200㎡ 이상의 건물 내부의 차고 또는 주차장 20대 이상 주차 가능한 기계식주차장 바닥면적 300㎡ 이상의 전기실, 발전실, 변전실, 축전지실, 전산실 등 소화수 수집·처리 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터널 지정문화재 중 국민안전처장관과 문화재청장이 협의하는 것			
옥외소화전설비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 9,000㎡ 이상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 저장·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			

주1.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장려식장 등

○ 경보설비

설비유형	설치 기준		
비상경보설비	연면적 400㎡ 이상, 지하층·무창층의 바닥면적 150㎡(공연장은 100㎡) 이상, 길이 500m 이상 터널,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비상방송설비	연면적 3,500㎡ 이상, 지하층 제외 층수 11층 이상, 지하층의 층수 3층 이상		
누전경보기	계약전류용량 100A 초과, 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 벽·바닥·반자가 불연재로나 준불연재료가 아닌 것		
자동화재탐지설비	지하구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식장, 복합건축물	연면적 600㎡ 이상	
	공동주택, 목욕장, 문화 및 집회시설 외 ^{주2)}	연면적 1,000㎡ 이상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동·식물 관련시설 외 ^{주3)}	연면적 2,000㎡ 이상	
	지하가 중 터널	길이 1,000m 이상	
	노유자 시설	노유자 생활시설	
		연면적 400㎡ 이상,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노유자시설 및 숙박시설	
	공장 및 창고시설	수량의 5,0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시설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요양병원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 바닥면적 합계 300㎡ 미만, 창살 설치된 것		
자동화재속보설비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24시간 상시 근무 시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30층 이상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국방·군사시설, 발전시설	바닥면적 1,500㎡ 이상(24시간 상시 근무 시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노유자 시설	노유자 생활시설	
		바닥면적 500㎡ 이상(24시간 상시 근무 시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수련시설	바닥면적 500㎡ 이상(24시간 상시 근무 시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바닥면적 500㎡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	아파트 등, 기숙사	연면적 1,000㎡ 미만	
	교육연구시설 또는 수련시설 내의 합숙사·기숙사	연면적 2,000㎡ 미만	
	숙박시설	연면적 600㎡ 미만	
	노유자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만 해당)	400㎡ 미만, 100명 미만	
시각경보기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물류터미널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발전시설 및 장례식장, 도서관, 방송국, 지하상가		
가스누설경보기	판매시설, 운수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물류터미널,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장례식장		
통합감시시설	지하구		

주2.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관광 휴게시설, 지하가(터널 제외) 등

주3. 분뇨 및 쓰레기 처리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 제외), 묘지관련 시설 등

○ 피난설비

설비유형	설치 기준	
피난기구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 피난층, 지상 1층, 지상 2층, 11층 이상인 층, 가스시설, 터널, 지하구는 제외	
인명구조기구	방열복, 인공소생기, 공기호흡기 설치	지하층 포함 층수 7층 이상의 관광호텔
	방열복, 공기호흡기 설치	지하층 포함 층수 5층 이상의 법원
	공기호흡기 설치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대규모점포 지하역사 지하상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유도등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유도표지	특정소방대상물 터널 및 지하구, 축사의 가축 사육 부분은 제외
	객석유도등	유흥주점영업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비상조명등	지하층 포함 층수 5층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바닥면적 450㎡ 이상인 지하층·무창층 길이 500m 이상 터널	
휴대용 비상조명등	숙박시설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대규모점포, 지하역사, 지하상가	

○ 소화용수설비

설비유형	설치 기준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연면적 5,000㎡ 이상, 가스시설, 터널, 지하구는 제외 지상 탱크의 저장용량 합계 100톤 이상인 가스시설 ※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설치 대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80m 이내, 지름 75mm 이상인 상수도용 배수관 미설치 지역의 경우에는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 설치

○ 소화활동설비

설비유형	설치 기준	
제연설비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무대부 바닥면적 200㎡ 이상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지하층·무장층의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해당용도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시외버스정류장,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대합실, 휴게시설	지하층·무장층 바닥면적 1,000㎡ 이상
	지하가(터널 제외)	연면적 1,000㎡ 이상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터널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연결승수관설비	5층 이상, 연면적 6,000㎡ 이상 위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지하층 포함 층수 7층 이상 위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지하층 층수 3층 이상,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지하가 중 길이 1,000m 이상 터널	
연결살수설비	판매시설, 운수시설, 물류터미널	해당용도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지하층(주 출입구와 도로가 접한 경우 제외)	바닥면적 150㎡ 이상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아파트, 학교의 지하층	바닥면적 700㎡ 이상
	지상 탱크의 용량 30톤 이상인 가스시설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연결통로	
비상콘센트설비	층수 11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11층 이상의 층
	지하 3층 이상,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지하층의 모든 층
	길이 500m 이상 터널	
무선통신보조설비	연면적 1,000㎡ 이상의 지하가(터널 제외) 길이 500m 이상의 터널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 지하층 층수 3층 이상,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지하층의 모든 층
	층수 30층 이상인 것	16층 이상의 모든 층
연소방지설비	지하구	

<별첨 3> 일본의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 경보설비, 피난시설 및 소방활동 필요시설 등에 대한 기준

○ 소방설비

유형	용도	시행령 10조		시행령 11조		시행령 12조				시행령 19조	시행령 20조	
		소화기구		실내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소화 설비				실외 소화설비	동력 소방펌프 설비	
		일반	지하실, 3층 이상	일반	지하실, 3층 이상	일반	지하실	4층~10층	11층 이상	일반	일반	
(1)	ㄱ 극장, 영화관, 관람시설	전체	바닥면적 50㎡ 이상	연면적 500㎡ 이상	바닥면적 100㎡ 이상	바닥면적 6,000㎡ 이상, 무대부 바닥면적 500㎡ 이상	바닥면적 1,000㎡ 이상, 무대부 바닥면적 300㎡ 이상	바닥면적 1,500㎡ 이상, 무대부 바닥면적 300㎡ 이상	① 전체 ② 복합용도는 10층 이하도 설치	① 1·2층의 바닥면적 합계 내화건축물: 9,000㎡ 이상 준내화건축물: 6,000㎡ 이상 기타: 3,000㎡ 이상 ② 동일한 부지 내에 2개 이상의 건축물 (내화건축물 및 준내화건축물은 제외)에 대해 해당 건축물의 1층 외벽 간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층은 3m 이하, 2층은 5m 이하인 경우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	① 실내 소화전 설비 대상물에 대해서는 옥외소화전 또는 1·2층에 각 소화장비를 설치한 경우 그 범위 내에서는 설치 면제 ① 옥외 소화전 설비 대상물에 대해서도 같은 설치 면제	
	ㄴ 공연장, 집회장	연면적 150㎡ 이상										
(2)	ㄱ 카바레, 카페, 나이트 클럽,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전체		단층이외 바닥면적 6,000㎡ 이상	바닥면적 1,000㎡ 이상	바닥면적 1,500㎡ 이상	바닥면적 1,000㎡ 이상	바닥면적 1,500㎡ 이상				바닥면적 1,000㎡ 이상
	ㄴ 놀이터, 댄스홀											
	ㄷ 성산업 점포 등											
(3)	ㄱ 노래방, 독실형 점포	전체		연면적 700㎡ 이상	바닥면적 150㎡ 이상	단층이외 바닥면적 6,000㎡ 이상	바닥면적 3,000㎡ 이상	바닥면적 1,500㎡ 이상				바닥면적 1,000㎡ 이상
	ㄴ 대합실, 음식점, 기타 물품 판매업 점포											
(4)	ㄱ 음식점	연면적 150㎡ 이상		단층이외 바닥면적 6,000㎡ 이상	바닥면적 1,000㎡ 이상	바닥면적 1,500㎡ 이상	바닥면적 3,000㎡ 이상	바닥면적 1,500㎡ 이상				바닥면적 1,000㎡ 이상
	ㄴ 백화점, 점포형 시장, 전시장, 기타 물품판매 영위 점포											
(5)	ㄱ 여관, 호텔, 숙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연면적 150㎡ 이상		단층이외 바닥면적 6,000㎡ 이상	바닥면적 1,000㎡ 이상	바닥면적 1,500㎡ 이상	바닥면적 3,000㎡ 이상	바닥면적 1,500㎡ 이상				바닥면적 1,000㎡ 이상
	ㄴ 기숙사, 하숙, 공동주택											
(6)	ㄱ 병원, 진료소, 조산소	연면적 300㎡ 이상		단층이외 바닥면적 6,000㎡ 이상	바닥면적 1,000㎡ 이상	바닥면적 1,500㎡ 이상	바닥면적 3,000㎡ 이상	바닥면적 1,500㎡ 이상				바닥면적 1,000㎡ 이상
	ㄴ 곤란한 자가 입주입소하는 사회 복지 시설											
	ㄷ 그 외의 사회 복지 시설											
	ㄹ 유치원·특별 지원 학교											
(7)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전 문학교·기타 각종 학교	연면적 300㎡ 이상										

(8)		도서관·미술관·박물관·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9)	ㄱ	증기 목욕탕·열기 목욕탕·기타 이와 유사한 공중 목욕탕	연면적 150㎡ 이상											
	□	ㄱ에 해당하지 않는 공중 목욕탕(목욕탕, 입욕시설 등)												
(10)		차량 정거장, 선박 또는 항공기의 선착장	연면적 300㎡ 이상											
(11)		신사·사원·교회·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연면적 1,000㎡ 이상	바닥면적 200㎡ 이상								
(12)	ㄱ	공장·작업장												
	□	영화 스튜디오·텔레비전 스튜디오			연면적 700㎡ 이상	바닥면적 150㎡ 이상								
(13)	ㄱ	자동차 주차장, 주차시설	연면적 150㎡ 이상											
	□	비행기, 항공기의 격납고												
(14)		창고		연면적 700㎡ 이상	바닥면적 150㎡ 이상			천장높이 10m 초과, 바닥면적 700㎡ 이상						
(15)		전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기업 사무실, 관공서 청사, 등)	연면적 300㎡ 이상	연면적 1,000㎡ 이상	바닥면적 200㎡ 이상									
(16)	ㄱ	(1)항에서 (15)항까지 중 특정방화 대상물*에 해당하는 복합용도 방화 대상물							복합용도 바닥면적 3,000㎡ 이상	복합용도 바닥면적 1,000㎡ 이상	복합용도 바닥면적 1,500㎡ 이상			
	□	ㄱ에 해당하지 않는 복합 용도 방화 대상물												
(16-2)		지하상가		연면적 150㎡ 이상				바닥면적 1,000㎡ 이상						
(16-3)		(16-2)항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고, 건물의 지하실에서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한 것(통칭 '준 지하 상가'), 1~15항 중 특정방화대상물*에 해당	전체					바닥면적 1,000㎡ 이상, 복합용도 500㎡ 이상						
(17)		중요 문화재·중요 유형 민속 문화재·사적												
(18)		거리 50m 이상의 아케이드												
(19)		도시 위원장이 지정하는 산림												
(20)		총무성령칙 제5조 3항에서 정하는 배·자동차	전체											

○ 경보설비

유형	용도	시행령 21조							시행령 21조2	시행령 22조		시행령 23조	시행령 24조					
		화재경보시스템							가스누출 화재경보 기	누전화재경보기		소방기관통 보 화재경보 설비	비상경보설비					
		일반	직통 계단 1개	지하실, 2층 이상	지하실, 무창층	11층 이상	통신 기 기실	도로제 공 부분		일반	전류용량		기기	시설				
										일반	일반	방송설비						
(1)	ㄱ	극장, 영화관, 관람시설																
	ㄴ	공연장, 집회장																
(2)	ㄱ	카바레, 카페, 나이트 클럽,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연면적 300㎡ 이상	전체														
	ㄴ	놀이터, 댄스홀																
	ㄷ	성산업 점포 등																
	ㄹ	노래방, 독실형 점포																
(3)	ㄱ	대합실, 음식점, 기타 물품 판매업 점포		전체														
	ㄴ	음식점																
(4)		백화점, 점포형 시장, 전시장, 기타 물품판매 영위 점포	연면적 300㎡ 이상		주차용도 바닥면적 200㎡ 이상	전체	바닥면적 500㎡ 이상	옥상부분 600㎡ 이상, 그 외 400㎡ 이상	지하실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연면적 300㎡ 이상	계약전류용 량 50A 초과	연면적 500㎡ 이상	수용인원 20명 이상 50명 미만	① 수용인원 50명 이상	① 지하실 제외 11층 이상		수용인원 30명 이상	
(5)	ㄱ	여관, 호텔, 숙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연면적 500㎡ 이상	전체														
	ㄴ	기숙사, 하숙, 공동주택																
(6)	ㄱ	병원, 진료소, 조산소	연면적 300㎡ 이상	전체														
	ㄴ	곤란한 자가 입주입소하는 사회 복지 시설																
	ㄷ	그 외의 사회 복지 시설																
	ㄹ	유치원·특별 지원 학교																
(7)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 학·전문 학교·기타 각종 학교	연면적 500㎡ 이상															
(8)		도서관·미술관·박물관·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9)	ㄷ	증기 목욕탕·열기 목욕탕·기타 이와 유사한 공중 목욕탕	연면적 200㎡ 이상	전체											수용인원 300명 이상	
	□	ㄷ에 해당하지 않는 공중 목욕탕(목욕탕, 입욕시설 등)	연면적 500㎡ 이상													
(10)		차량 정거장, 선박 또는 항공기의 선착장	연면적 500㎡ 이상													
(11)		신사·사원·교회·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연면적 1,000㎡ 이상													
(12)	ㄷ	공장·작업장	연면적 500㎡ 이상										연면적 500㎡ 이상	수용인원 20명 이상 50명 미만		
	□	영화 스튜디오·텔레비전 스튜디오														
(13)	ㄷ	자동차 주차장, 주차시설	전체													
	□	비행기, 항공기의 격납고														
(14)		창고	연면적 500㎡ 이상													
(15)		전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기업 사무실, 관공서 청사, 등)	연면적 1,000㎡ 이상										연면적 1,000㎡ 이상			
(16)	ㄷ	(1)항에서 (15)항까지 중 특정방화 대상물*에 해당하는 복합용도 방화 대상물	※1	전체	※2				※3	※4	계약전류용량 50A 이상				수용인원 500명 이상	
	□	ㄷ에 해당하지 않는 복합 용도 방화 대상물														
(16-2)		지하상가	연면적 300㎡ 이상													
(16-3)		(16-2)항 제외 건물의 지하실에서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한 것(통칭 '준 지하 상가')	※5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특정용도 바닥면적	전체			전체		전체	

									합계 500㎡ 이상						
(17)		중요 문화재·중요 유형 민속 문화재·사적	전체								연면적 500㎡ 이상				
(18)		거리 50m 이상의 아케이드													
(19)		도시 위원장이 지정하는 산림													
(20)		총무성령(칙 제5조 3항)에서 정하는 배자동차	전체												

- ※1. 연면적 500㎡ 이상, 특정용도 바닥면적합계 300㎡ 이상
- ※2. 바닥면적 300㎡ 이상, (2), (3)유형의 용도 존재 총 100㎡ 이상, 없는 것 300㎡ 이상
- ※3.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특정용도 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
- ※4. 연면적 500㎡ 이상, 특정용도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
- ※5. 연면적 500㎡ 이상, 특정용도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

○ 피난시설 및 소방활동 필요시설

유형	용도	시행령 25조			시행령 26조	시행령 28조	시행령 28조의 2	시행령 29조	시행령 29조의2		시행령 29조의3							
		피난기구			유도등	배연설비	연결살수 설비	연결송수관	비상콘센트 설비		무선통신 보조설비							
		2층 이상, 지하	3층 이상	기타	피난통로, 통로, 객석				일반	11층 이상								
(1)	ㄱ	극장, 영화관, 관람시설	수용인원 50명 이상 ※1	3층 이상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층과 연결되는 직통계단이 두 개 이상 설치되어 있지 않은 층에서 수용인원 10명 이상 ※4	전체	무대부 바닥면적 500㎡ 이상	지하실 바닥면적 700㎡ 이상	① 지하실 제외 층수 7층 이상 ② 지하실 제외 층수 5층 이상, 연면적 6,000㎡ 이상	전체									
	ㄴ	공연장, 집회장				지하실·무창층 바닥면적 1,000㎡ 이상												
(2)	ㄱ	카바레, 카페, 나이트 클럽,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수용인원 30명 이상 ※2												
	ㄴ	놀이터, 댄스홀																
	ㄷ	성산업 점포 등																
(3)	ㄱ	대합실, 음식점, 기타 물품 판매업 점포																
	ㄴ	음식점																
(4)		백화점, 점포형 시장, 전시장, 기타 물품판매 영위 점포																
(5)	ㄱ	여관, 호텔, 숙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input type="checkbox"/>	기숙사, 하숙, 공동주택			※5						
(6)	<input type="checkbox"/>	병원, 진료소, 조산소	수용인원 20명 이상 ※2		전체						
	<input type="checkbox"/>	관련한자가 입주·입소하는 사회 복지 시설									
	<input type="checkbox"/>	그 외의 사회 복지 시설									
	<input type="checkbox"/>	유치원·특별 지원 학교									
(7)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전문 학교·기타 각종 학교			지하실·무창층 또는 11층 이상						
(8)		도서관·미술관·박물관·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9)	<input type="checkbox"/>	증기 목욕탕·열기 목욕탕·기타 이와 유사한 공중 목욕탕	수용인원 50명 이상 ※1		전체						
	<input type="checkbox"/>	이에 해당하지 않는 공중 목욕탕(목욕탕, 입욕시설 등)									
(10)		차량 정거장, 선박 또는 항공기의 선착장				지하실·무창층 바닥면적 1,000㎡ 이상					
(11)		신사·사원·교회·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12)	<input type="checkbox"/>	공장·작업장	수용인원 150명 이상 ※3		지하실·무창층 또는 11층 이상						
	<input type="checkbox"/>	영화 스튜디오·텔레비전 스튜디오									
(13)	<input type="checkbox"/>	자동차 주차장, 주차시설									
	<input type="checkbox"/>	비행기, 항공기의 격납고									
(14)		창고									
(15)		전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기업 사무실, 관공서 청사 등)	수용인원 150명 이상 ※3								
(16)	<input type="checkbox"/>	(1)항에서 (15)항까지 중 특정방화 대상물*에 해당하는 복합용도 방화 대상물			전체						
	<input type="checkbox"/>	이에 해당하지 않는 복합 용도 방화 대상물									
(16-2)		지하상가			전체	바닥면적 1,000㎡ 이상			연면적 1,000㎡ 이상		연면적 1,000㎡ 이상
(16-3)		(16-2)항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고, 건물의 지하실에서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한 것(통칭 '준 지하상가'), 1~15항 중 특정방화대상물*에 해당											
(17)	중요 문화재·중요 유형 민속 문화재·사적											
(18)	거리 50m 이상의 아케이드											
(19)	도시 위원장이 지정하는 산림											
(20)	총무성령칙 제5조 3항)에서 정하는 배·자동차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2층은 제외

※2. 아래층에 특정용도가 있는 경우

※3. 지하실·무창층의 경우

※4. (2), (3), (16)항의 경우에는 2층 이상의 층에서 내부총무성이 정하는 피난상 유효한 통로가 없거나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5. 지하실·무창층, 11층 이상

<별첨 4> 일본 도쿄도의 건축물 안전관련 조례

○ 개요

- 도쿄도의 건축물 안전관련 조례에는 「건축안전조례」, 「화재예방조례·시행규칙·시행규정」, 「지진재해대책조례」 등이 있음.

○ 건축안전조례에서의 화재예방관련 주요 내용

- 피난시설 설치(7조-2)
 -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두 개 이상의 직통계단 설치
 - 건축기준법시행령 121조 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바닥면적 합계 100㎡ 이하인 것(주요구조부가 준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건축물은 200㎡ 이하)
 - 지하 2층 이상, 5층 이하의 층 중 풍속영업, 음식점의 용도로 제공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 100㎡ 이하인 것(주요구조부가 준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건축물은 200㎡ 이하)
- 준방화지역 지정(7조-3)
 - 지사는 ‘도쿄도지진재해대책조례’ 제1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정비지역·기타재해의 위험이 높은 지역 중 특히, 지진 시 발생하는 화재 등에 위험이 높은 지역 지정
 - 준방화지역내 건축물 중 연면적 500㎡ 이상은 내화건축물로 건축
 - 기타건축물은 내화건축물 또는 준내화건축물, 시행령 136-2조에 규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 건축물로 건축
- 직통계단에서 피난경로(8조)
 - 피난경로에 내화구조의 벽 또는 시행령 제4항 제2호에서 정하는 소방시설로 구획
 - 법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나 준내화구조로 하는 건축물의 지하실 또는 3층 이상의 층에서 실내직통계단을 통해 피난층으로 향하는 야외출구까지의 경로

○ 화재예방조례

- 주택방화대책 추진(55조의 5-2)
 - 방화의식 고양
 - 노인 등 인명의 안전 확보
 - 주택의 화재성능 향상
 -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환경정비
 - 그 밖에 주택화재 예방에 필요한 조치
- 주택화재 예방(55조의 5-3)
 - 도민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소화기, 스크린클러 설비 및 기타 초기소화에 필요한 기구·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
 - 방염성을 갖는 침구, 의류, 커튼 등 물품의 사용

-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 의무화(55조의 5-4)
- 소화기구 설치(36조)
 - 방화대상물 중 연면적 150㎡ 이상

○ 지진재해대책조례

- 화재예방(24조)
 - 지사는 지진에 의한 화재의 발생 및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구시정촌과 협력을 통해 적극 추진
- 초기소화(25조)
 -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화재에 대비하여 소화기 등을 배치
- 건축물의 불연화 추진(28조)
 - 지진에 의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 및 기타 건축물의 불연화 촉진
- 연소차단대역의 정비(29조)
 - 화재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구시정촌과 협력
 - 연소차단대역(도로, 하천, 철도, 공원 등의 도시시설과 이와 인접한 불연건축물 등으로 구성된 불연공간)의 정비
- 방재리더 육성(37조)
 - 구시정촌 및 사업자와 협력을 도모하면서 조직의 방재리더를 육성

○ 도쿄도 건축안전조례 목차

제1장 총칙	제 1 절	취지 (제1조)
	제 1-2 절	적용 지역 (제1조의 2)
	제 2 절	부지 및 도로 (제2조 - 제5조)
	제 3 절	절벽 (제6조·제6조의 2)
	제 4 절	방재 구조 (제7조 - 제8조)
	제 5 절	가설 건축물의 적용 제외 (제8조의 2)
	제 6 절	일정한 여러 건축물에 대한 제한의 특례 등 (제8조의 3·제8조의 4)
	제 7 절	계단 피난 안전 성능을 가진 건축물의 층 등에 대한 적용 제외 (제8조의 5, 제8조의 6)
	제 8 절	자동 회전문 (제8조의 7 - 제8조의 18)
제2장 특수 건축물	제 1 절	통칙 (제9조 - 제11조의 4)
	제 2 절	학교 (제12조 - 제15조)
	제 3 절	공동 주택 등 (제16조 - 제21조)
	제 4 절	물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점포 및 음식점 (제22조 - 제26조)
	제 5 절	자동차 차고 등 (제27조 - 제34조)
	제 6 절	호텔 등 (제35조 - 제37조)
	제 7 절	공중 목욕탕 (제38조·제39조)
	제 8 절	홍행 장 등 (제40조 - 제52조)
	제 9 절	삭제
	제 10 절	기타 특수 건축물 (제72조·제73조)
제3장 지하상가 등	제 1 절	지하 상가 (제73조의 2 - 제73조의 11)
	제 2 절	지하에 마련 건축 설비 (제73조의 12 - 제73조의 14)
	제 3 절	지하도로 통하는 건물의 지하 부분 (제73조의 15 - 제73조의 18)
	제 4 절	지하 공작물에 설치하는 자동차 주차장 등의 시설 (제73조의 19)
	제 5 절	제한 완화 (제73조의 20)
제4장 건축설비	(제74조 - 제81조)	
제5장 도로에 관한 기준	(제82조)	
제6장 벌칙	(제83조)	
부칙		

○ 도쿄도 화재예방조례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
제2장		삭제
제3장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위치, 구 조 및 관리의 기 준 등	제 1 절	불을 사용하는 설비 및 그 사용에 즈음해,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의 위치, 구조 및 관리의 기준 (제3조 - 제17조)
	제 2 절	불을 사용하는 기구 및 그 사용에 즈음해,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기구의 취급 기준 (제18조 - 제22조의 2)
	제 3 절	불 사용에 대한 제한 등 (제23조 - 제28조)
	제 4 절	화재에 관한 경보의 발령 중에 불의 사용의 제한 (제29조)
제4장 지정 수량 미만의 위험물 및 지정 가연물 의 저장 및 취급 의 기술상의 기 준 등	제 1 절	지정 수량 미만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술상의 기준 등 (제30조 - 제32조)
	제 2 절	지정 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술상의 기준 등 (제33조 - 제34조의 3)
	제 3 절	섹션 기준의 특례 (제34조의 4)
제5장 소방 시설 등의 기술 기준 추가		(제35조 - 제47조)
제6장 피난 및 방화 관리 등		(제48조 - 제55조의 3의 10)
제6-2장 자위 소방		(제55조의 4 - 제55조의 5)
제7장 주택의 화재 안전 보장		(제55조의 5의 2 - 제55조의 5의 4)
제7-2장 소방 설비업		(제55조의 5의 5 - 제55조의 5의 8)
제7-3장 우량 방화 대상물 인증 표시 제도		(제55조의 5의 9 - 제55조의 5의 14)
제8장 화재 예방 심의회		(제55조의 6 - 제55조의 13)
제9장 잡칙		(제56조 - 제65조)
제10장 벌칙		(제66조 - 제68조)
부칙		

○ 도쿄도 지진재해대책조례 목차

제1장 총칙	제 1 절	목적 (제1조)
	제 2 절	지사의 책무 (제2조 - 제7조)
	제 3 절	도민의 책무 (제8조)
	제 4 절	사업자의 책무 (제9조 - 제11조)
제2장 예방 대책	제 1 절	지진에 관한 연구, 공표 등 (제12조)
	제 2 절	방재 도시 만들기의 추진 (제13조)
	제 3 절	도시 시설 및 건축물 등의 안전 확보 (제14조 - 제23조)
	제 4 절	화재 예방 등 (제24조 - 제31조)
	제 5 절	방재 홍보 및 방재 교육 (제32조·제33조)
	제 6 절	방재 조직 (제34조 - 제37조)
	제 7 절	지역 간의 지원 네트워크 구축 (제38조)
	제 8 절	자원 봉사에 대한 지원 (제39조)
	제 9 절	요원호자 (원조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 대한 시책 (제40조)
	제 10 절	방재 훈련 (제41조·제42조)
	제 11 절	도민 등의 의견 (제43조)
제3장 응급 대책	제 1 절	응급 체제 등의 정비 (제44조 - 제46조)
	제 2 절	피난 (제47조 - 제51조)
	제 3 절	구출 및 구조 활동 거점 등의 보장 (제52조)
	제 4 절	귀가 곤란 자 대책 (제53조·제54조)
제4장 부흥 대책	제 1 절	지진 재해 부흥의 추진 (제55조·제56조)
	제 2 절	지역 협동 부흥 (제57조·제58조)
제5장 위임		(제59조)
부칙		